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39
------------	-------

발의연월일 : 2023. 6. 8.

발의자 : 정우택 · 홍문표 · 성일종
황보승희 · 윤창현 · 박성민
백종현 · 태영호 · 배준영
하태경 · 유경준 · 박덕흠
김석기 · 이현승 · 오영환
金炳旭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택법」 상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인구 50만 이상)”이고,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면서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승인권자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리업자 선정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감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지 않고 감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주체를 포함시켜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 전단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로, “승인”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가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① (생략) ② <u>시·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u>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u> <u>-----</u> <u>-----</u> <u>-----</u> <u>-----.</u> <u>-----</u> <u>-----</u> <u>-----.</u></p>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